

의안번호	제500호
의결 연월일	2024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발의자	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1월 15일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이옥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00
----------	-----

발의연월일 : 2024년 1월 15일

발의자 : 이옥규, 노금식, 최정훈,
김성대, 오영탁, 이태훈,
임영은

1. 제정 이유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 장애인의 창작활동 기회를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 장애인 고용촉진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제8조)

-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나. 관련부서 협의: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와 협의함.
-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라. 조례안예고 : 2024. 1. 16. ~ 1. 21.(5일간)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전시·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운영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
9.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 기관·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 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내 관련 기관의 장애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의 창작·전시·공연 활동 지원
2.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3.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4. 장애예술인의 작품에 관한 판로지원
5.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 도지사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노력) 도지사는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와 도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도지사는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시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6조 제4호를 삭제한다.

관련법령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전시·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운영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

9.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장애예술인 고용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장애예술인의 범위) 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로서 같은 조 제25호에 따라 공표된 문화예술 관련 저작물이 있는 사람
 - 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목적, 제출할 자료나 의견 등의 범위, 제출기한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비용 발생요인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사업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3. 관련조문

- 안 제6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사업 지원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 추계기간 :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나. 추계결과

1) 산출과정

-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 20,000천원
 - 장애예술인 공연 및 전시 1식 x 20,000천원 = 20,000천원
- 장애예술인 실태조사 : 30,000천원 (2025년 추진, 3년마다 실시)
 - 장애예술인 실태조사 1식 x 30,000천원 = 30,000천원

2) 산출결과 : 연간 20,000천원, 2024년부터 향후 5년간 160,000천원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세출)

(단위: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160,000	20,000	50,000	20,000	20,000	50,000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10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장애예술인 실태조사	60,000		30,000			30,000

6.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220-3842)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							
세 출	20,000	50,000	20,000	20,000	50,000	160,000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장애예술인 실태조사	30,000			30,000	60,000	
재원 조달							
의 존 재 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 체 수 입	소 계	20,000	50,000	20,000	20,000	50,000	160,000
	지방세	20,000	50,000	20,000	20,000	50,000	16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구·군비							
기 타							